



<노동시장개혁 이슈 리포트 ⑩>

파업중 직장점거, 합당한가?

【우리나라 쟁의행위의 문제점】

- 선진국에서는 법률과 판례에 의해 대부분 직장점거를 위법한 쟁의행위로 보고 있음. 따라서 노조의 파업도 사업장 밖에서 하는 파업(work out)이 일반적임. 보호받는 쟁의행위 수단도 타인의 의사를 침해하지 않는 피켓팅, 영업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불매운동 정도에 한정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노조가 사업장 안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점거파업이나 농성파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사용자의 영업방해와 시설파괴, 폭행 등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쟁의행위는 근로제공을 소극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며, 사용자의 조업계속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기업시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노조의 파업권은 인정하되, 사용자의 조업계속권과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법원은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직장점거 이외에 직장이나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 파업은 허용된다고 판결하고 있음. 노조가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악용하여 부분적·병존적 점거를 넘어 장기점거 파업을 벌임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직장점거는 사용자의 조업권·시설관리권과 상치되나, 기업별노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사무실이 사업장 안에 있고 사업장 안에서 조합활동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판례에서는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지 않고 조업도 방해

하지 않는 부분적이고 병존적인 점거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 전면적·배타적 점거나 장기점거에 대해서까지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님.

- 하지만 노조는 조합원들의 파업 대오 이탈을 막고 사용자의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여 파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직장점거를 쟁의행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특히 직장점거는 소수의 인원으로 대다수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노조집행부는 직장점거를 통한 조업행위 방해라는 불법수단의 유혹에 빠지기 쉬움.

【해외의 관련제도 사례】

- ILO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직장점거 파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ILO는 사업장 점거를 규제하는 입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사업장이 점거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사업장 출입을 위해 경찰의 원조를 요청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음.
- 미국은 연좌파업 내지 직장점거 파업을 노동법상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고, 파업금지명령에 불응할 경우는 체포까지 하는 등 일련의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독일에서도 직장점거 파업은 사기업의 소유권과 영업의 자유 침해로서 곧바로 위법으로 간주함. 점거자의 동기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점거금지가처분 소송은 물론 경찰력과 회사의 경비원 등을 이용한 실행행사도 용인하고 있음.

【직장점거 파업 개선방안】

- 사용자도 직장점거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사후구제로 복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노조의 불법적인 직장점거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직장점거 파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물훼손 및 작업방해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조치를 취함으로써 파업동력을 약화시키고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또한 노조의 직장점거로 생산차질이 지속될 경우 직장폐쇄도 고려할 수 있음.

- 노조의 직장점거 투쟁으로 인한 문제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빈번히 유발하는 잘못된 노조의 투쟁방식과 미온적인 공권력의 작동, 그리고 직장점거를 용인하는 것 같은 법 운용에도 그 원인이 있음. 따라서 쟁의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법과 원칙 준수노력과 함께 직장점거와 같은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법제도 개선과 적절한 법 운용이 시급함.

【참고자료】

경총, 노조의 직장점거 문제점과 대응방안, 경영계 2012년 9월호
선진노사문화연구원, 선진쟁의질서에 대한 연구, 2009.11